「KB 리더스정기예금」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KB리더스정기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신규가입일로부터 모집 마감일까지의 기간과 모집마감일 익일(기준 지수 결정일)부터 예금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전기간을 말합니다.

제 5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 6 조 용어의 정의

시장지수라 함은 KOSPI200지수 및 개별주가 등 주가지수와 국제금가격, 환율, 채권금리 등은행법 등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파생거래가 가능한 지수를 의미합니다.

제 7 조 상품유형 및 이자지급방법

- ① 이 예금에는 만기상환형과 조기상환형이 있습니다.
- ② 만기상환형은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③ 조기상환형은 특정 시점에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만기일 이전이라도 이자를 원금과 함께지급하며, 해당 원리금은 예금주가 지정한당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로자동으로 입금합니다. 단, 예금주가 지정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또는 이예금이 압류, 사고신고, 질권설정 및 기타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업점창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 8 조 이자계산방법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모집기간 중 이자와 시장 지수의 변동에 따른 약정이자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② 모집기간 중 이자는 예금의 신규가입시 은행이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③ 약정이자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장지수는 신규가입시 은행이 정하여 고지한 지수로 합니다.
- ④ 만기상환형의 약정이자 계산은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조기상환형의 약정이자 계산 및 조기상환 방법은 신규가입 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약정이율 조견표는 기준지수결정일 익영업일 이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신규가입시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⑦ 이 예금의 만기후이율은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 합니다.

제 9 조 중도해지

이 예금은 모집기간 경과 후에는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정 에 의해 가입자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신규가입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수수료율 에 의해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하므로 가입원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분할인출 및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제 10조의 '양도'에 관한 제한사항은 2010. 12. 9 가입계좌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10. 10 가입계좌부터 적용합니다.

「거치식예금」 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③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 4 조 거래방법 및 인감신고

예금거래기본약관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 고 거래처가 통장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는 통장 발행 및 인감(서명)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일 이후부터 적용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 합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 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실명거래

-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사람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 이라 합니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합니다. 다만, 제8조 증권의 부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언적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출금기 ·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합니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 합니다) 또는 수표·어음 용지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 · 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합니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은행에서 따로 정하는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③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입금

-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 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합니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 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 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 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됩니다.
 -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또는 계좌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 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 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됩니다.
-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은행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줍니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자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 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합니다.
-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1개월 동안 게시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 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합니다.
-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제 13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 나. 거치식, 적립식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지급·해지청구

-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 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위한 공동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사고계좌` 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 를 취한다.
-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 금융기관이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 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 하여야 한다.
- ⑦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고등 교육이다 지급하시와 관련하여 0 조에서 정하지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시기

-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이 경우**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합니다.
-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 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 하여야 합니다.
-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처리 합니다.
 -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 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지급합니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 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동화사가 거대서 **본인이 아닌 경우**, 그 동화사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 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 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 니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면책

-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_ .. ㅇㅡ ㅇㅗㅋ 런던야어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 버흥 드인 그용포보는 ... 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수수료

-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아두거나 게시합니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예금의 비밀보장

- ① 은행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 (송금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약관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립 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립니다.
 - 1. 제1항에 의한 게시
 -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 5. 거래통장에 표기
 -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합니다.

제 23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 합니다.

제 24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12.0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12.30부터 시행합니다.